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제 2 소 위 원 회 심의 · 의결

안 건 번 호 제2024-221-667호

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

피 심 인

의결연월일 2024. 11. 4.

주 문

- 1.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가. 과 태 료 : 3,600,000원
 - 나. 납부기한 :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
 - 다. 납부장소 :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
- 2. 피심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.

이 유

Ⅰ. 기초 사실

피심인은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홈페이지()를 운영하는 「舊 개인정보보호법」1)(이하'舊 보호법'이라 한다)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,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.

< 피심인의 일반현황 >

피심인명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대표자 성명	주소	종업원 수 (명)

Ⅱ. 사실조사 결과

1. 조사 배경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(privacy.go.kr)에 유출 신고('23. 2. 8.)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·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('23. 6. 3. ~ '24. 5. 17.)하였으며,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.

2. 행위 사실

가. 개인정보 수집현황

피심인은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홈페이지()를 운영하면서 '23. 6. 3. 기 준으로 이용자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.

¹⁾ 개인정보 보호법(법률 제16930호, 2020. 2. 4. 일부개정, 2020. 8. 5. 시행)

< 개인정보 수집현황 >

구분	항목	수집일	건수

나.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

'23. 2. 6. 신원 미상의 자(이하 '해커')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취득한 피심인의 관리자 계정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게시판에 웹셸을 업로드하여 DB 접속 및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후 일부 이용자 대상으로 스팸문자를 발송하였다.

피심인은 '22. 6. 15. ~ '23. 2. 8. 동안 DB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는 등 침입탐지·차단시스템 설치·운영을 소홀히 하였고, 외부에서 관리자페이지 접속시 아이디, 비밀번호 외에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았다.

- 1) (유출 규모 및 항목) 이용자 19,403명의 개인정보*가 유출되었다.
- * 아이디, 비밀번호(SHA-512 암호화), 이름, 이메일, 주소, 전화번호, 주문내역
- 2) (유출 인지 및 대응) 유출 인지 후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신고하였다.

일시		피심인의 유출 인지·대응 내용		
'23. 2. 6.	12:50	개인정보를 유출한 해커로부터 협박 메일 수신 및 개인정보 <u>유출 인지</u>		
'23. 2. 6.	15:31	유출 사실 홈페이지 <u>공지</u>		
'23. 2. 7.	15:42	유출 사실 <u>통지(이메일)</u>		
'23. 2. 8.	23:24	개인정보 유출 신고		
'23. 2. 8.	-	관리자 페이지 기본 경로 변경 및 접근통제 설정		
'23. 2. 9.	-	관리자 페이지 로그인 시 2차 인증 적용		

3. 개인정보의 취급.운영 관련 사실관계

가.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

피심인은 '22. 6. 15. ~ '23. 2. 8. 동안 개인정보처리시스템(DB)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는 등 침입탐지·차단시스템 설치·운영을 소홀히 하였고, 외부에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(관리자 페이지)에 접속할 경우 아이디, 비밀번호 외에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운영한 사실이 있다.

나.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

피심인은 '23. 2. 6. 해커로부터 협박 메일을 수신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,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 경과한 '23. 2. 8. 23:24 유출 신고한 사실이 있다.

4.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'24. 5. 20.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, 피심인은 '24. 5. 24. 개인정보보호위 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.

Ⅲ. 위법성 판단

1. 관련법 규정

가. 舊 보호법 제29조는 "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,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같은 법 시행령2)(이하'舊 시행령')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"개인정보에 대한 불법

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'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(마목)'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舊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은 "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舊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·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舊 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 기준3)(이하'舊기술적 보호조치기준') 제4조제4항은 "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여야"하고, 제4조제5항은 "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(1.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)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나.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"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·도난·유출(이하 "유출등"이라 한다)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(제1호),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(제2호),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(제3호),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(제4호),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(제5호)를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·신고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.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舊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은 "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·도난·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 제3항은 "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·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

²⁾ 대통령령 제32813호, 2022. 7. 19. 일부개정, 2022. 10. 20. 시행

³⁾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-3호, 2021. 9. 15. 시행

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·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·신고하여야 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2. 위법성 판단

가.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

[舊 보호법 제29조(안전조치의무)]

피심인이 '22. 6. 15. ~ '23. 2. 8. 동안 개인정보처리시스템(DB)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는 등 침입탐지·차단시스템 설치·운영을 소홀히 하고, 외부에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(관리자 페이지)에 접속하는 경우 아이디, 비밀번호 외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운영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,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,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4항·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.

나.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

[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(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·신고에 대한 특례)]

피심인은 '23. 2. 6. 12:50 해커로부터 협박 메일을 수신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,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 경과한 '23. 2. 8. 23:24 유출 신고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.

< 피심인의 위반사항 >

위반행위	법률	舊 시행령	세부내용(고시 등)
안전조치의무	舊 보호법 §29	舊 시행령 §48의2①	・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행위 (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§4④) ・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은 행위 (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§4⑤)
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·신고에 대한 특례	舊 보호법 §39의4①	舊 시행령 §48조의4	・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신고한 행위

Ⅳ. 처분 및 결정

1. 과태료 부과

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(안전조치의무), 제39조의4제1항(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·신고에 대한 특례)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·12호의3, 舊시행령 제63조, 舊 시행령 [별표2] '과태료의 부과기준'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4)(이하 '과태료 부과기준'이라 한다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※ '질서위반행위규제법' 제3조(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)제2항에 따라 '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'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부과 시 피심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「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(개인정보위 지침, '23.9.15.시행)」을 적용함

가. 기준금액

舊 시행령 제63조의 [별표2]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,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반행위 기준 금액을 600만원으로 산정한다.

< 舊 시행령 [별표2] 2. 개별기준 >

	위 반 사 항	근거법령	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(만원)		
			1회	2회	3회 이상
자.	법 제23조제2항, 제24조제3항, 제25조제6항, 제28조의4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 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l 번 제 75주	600	1,200	2,400
도.	법 제39조의4제1항(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)을 위반하여 이용자·보호위원회 및 전문기관에 통지 또 는 신고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통 지 또는 신고한 경우	법 제75조	600	1,200	2,400

⁴⁾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, 2023. 9. 15. 시행

나.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

1) (과태료의 가중)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'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[별표3]의 가중기준(▲위반의 정도, ▲위반 기간, ▲조사 방해, ▲위반 주도)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.'라고 규정하고 있다.

피심인의 경우, 가중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금액을 유지한다.

2) (과태료의 감경)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는 '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[별표2]의 감경기준(▲당사자 환경, ▲위반정도, ▲업무형태 및 규모, ▲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, ▲조사 협조및 자진 시정 등)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, 감경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.'라고 규정하고 있다.

피심인의 경우, 舊 보호법 제29조(안전조치의무) 및 제39조의4제1항(개인정보유출등의 통지·신고에 대한 특례) 위반행위에 대해 ▲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인 경우, ▲시정을 완료한 경우, ▲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70%를 각각 감경한다.

다. 최종 과태료

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(안전조치의무), 제39조의4제1항(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· 신고에 대한 특례)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·감경을 거쳐 총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< 과태료 산출내역 >

위반행위(세부내용)	기준금액	가중액	감경액	최종 과태료	
안전조치의무 (접근통제)	600만 원	-	420만원	180만원	
개인정보 유출통지·신고 특례 (신고 지연)	600만 원	-	420만원	180만원	
	360만원				

2. 결과 공표

舊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'舊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5)」제2 조(공표요건)에 따라,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舊 보호법 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2개 이상 한 경우(제4호),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(제5호)에 해당하므로,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. 다만, 개정된「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6)」에 따라 공표 기간은 1년으로 한다.

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한 내용 및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.

위반행위를 순번 한 자		위	반행위의 내용	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		
	명칭	위반조항	위반내용	처분일자	처분내용	
1		舊 보호법* 제29조	안전조치의무 (접근통제)	2024 11 4	과태료 180만 원	
		舊 보호법 제39조의4	개인정보 유출통지·신고 특례	2024. 11. 4.	과태료 180만 원	

* 舊 보호법 : 2020. 8. 5. 시행, 법률 제16930호

2024년 11월 4일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

V. 결론

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(안전조치의무), 제39조의4제1항(개인정보 유출등의통지·신고에 대한 특례)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(과태료)제2항제6호·제12호의3, 제66조(결과의 공표)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,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의결한다.

⁵⁾ 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, 2020. 11. 18. 시행

⁶⁾ 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, 2023. 10. 11. 시행

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

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 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 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,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(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)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.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.

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2024년 11월 4일

위원장 이문한 (서명)

위 원 박상희 (서명)

위 원 조소영 (서명)